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18
----------	-----

2017. 10. 24(화)
행 정 문 화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광희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3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광희 의원)

가. 제안사유

○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민에 대한 균등한 독서 교육 기회 제공 및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 도내 도서관은 도민의 시설이용 등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협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호)

- 금번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지적 능력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안 제4조에서는 도민에 대한 균등한 독서 교육 기회 제공 및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 셋째, 안 제6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 넷째, 안 제7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대한 도내 도서관의 협력을,
 - 다섯째, 안 제8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이 금번 제정조례안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시행, 독서 교육의 기회 균등 제공 및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독서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등 「독서문화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의 위배사항이 없고, 도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사유 : 안 제2조제3호와 안 제5조에 약칭을 규정하였으나 이후 본문에 사용된 조항이 없어 삭제하기로 함.

- 안 제2조제3호(이하 “법”이라 한다)
- 안 제5조(이하 “도”라 한다)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제 718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발 의 자	이광희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17년 9월 29일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8
----------	-----

발의연월일 : 2017년 9 월 29 일
발 의 자 : 이광희, 최광옥, 연철흙,
박봉순, 박한범, 이언구

1. 제정이유

-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민에 대한 균등한 독서 교육 기회 제공 및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나.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다.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 라. 도내 도서관은 도민의 시설이용 등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협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마.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 59호
- 다. 협 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 라.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3.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시설 마련
 2. 도민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직장 등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육성 사업
 3.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지역서점”이란 <u>충청북도</u> (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제정안과 같음) 3. ----- <u>충청북도</u> ----- ----- -----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 <u>독서문화진흥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 「 <u>독서문화진흥법</u> 」 제6조----- ----- ----- ----- -.

관계법령 발췌

□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도민들의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3. 관련조문

- 도서관법 제29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작은도서관 구입비, 공공도서관 연장지원사업 소요경비 산출

나. 추계 결과

-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지원 : 426,000천원(매년)
-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 150,000천원(매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 1,265,442천원(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지원 : 도비 20%, 시군비 80%
-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 도비 30%, 시비 7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 국비 38%, 도비 25%, 시군비 37%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841,442	1,841,442	1,841,442	1,841,442	1,841,442	9,207,210
국 비		492,361	492,361	492,361	492,361	492,361	2,461,805
도 비		446,565	446,565	446,565	446,565	446,565	2,232,825
시군비		902,516	902,516	902,516	902,516	902,516	4,512,580
세 출		1,841,442	1,841,442	1,841,442	1,841,442	1,841,442	9,207,210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426,000	426,000	426,000	426,000	426,000	2,130,000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265,442	1,265,442	1,265,442	1,265,442	1,265,442	6,327,210
재원 조달		1,841,442	1,841,442	1,841,442	1,841,442	1,841,442	9,207,210
의 존 재 원	소 계	492,361	492,361	492,361	492,361	492,361	2,461,805
	보조금	492,361	492,361	492,361	492,361	492,361	2,461,805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446,565	446,565	446,565	446,565	446,565	2,232,825
	지방세	446,565	446,565	446,565	446,565	446,565	2,232,82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사·군비		902,516	902,516	902,516	902,516	902,516	4,512,58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